◉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2-313호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'행정절차법'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04월 12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최근 유가급등으로 액화석유가스(부탄) 가격도 급등함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액화석유가스(부탄)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인하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액화석유가스(부탄)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을 톤당 62,283원 톤당 43,600원으로 인하하고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

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일반우편 : (30118)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
- 전자우편 : cami@korea.kr
- 팩스 : 044-203-4763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(전화 044-203-5236, 팩스 044-203-476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